



대 법 원
제 3 부
판 결

사 건 2016두615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원고, 피상고인 참여연대
대표자 정강자
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(통인동)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
담당변호사 김소리, 박진석
피고, 상고인 국방부장관
소송수행자 박정호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4. 선고 2016누36415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

이 유



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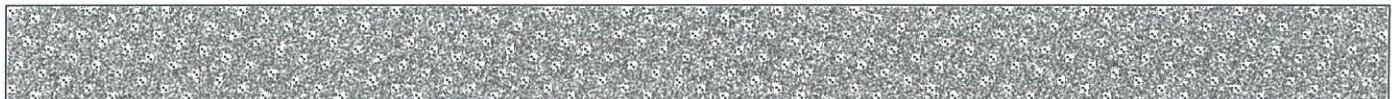




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7. 3. 9.

재판장	대법관	김재형	<u>김재형</u>	
	대법관	박병대	<u>박병대</u>	
주심	대법관	박보영	<u>박보영</u>	
	대법관	권순일	<u>권순일</u>	





정본입니다.

2017. 3. 9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김성자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